

## 유럽회사법(안)의 문제점 -특히 영국에서의 반응을 중심으로-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2

문헌: 기업법의 현대적 과제; 행술 이태로교수화갑기념논문집

출처: 행술 이태로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81]

### I. 유럽의 일부로서의 영국

영국은 유럽의 일부로서 그 법제가 유럽대륙의 법제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왔고, 영국 회사법은 특히 상거래에 필수 불가결한 법으로서 유럽대륙의 회사법들과의 상호 영향 속에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영국회사법이 유럽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도 오래 전부터인데, 예컨대 법인형태의 회사 개념이라거나 복식부기제도가 유럽대륙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고, 19세기에 들어와서 공개회사와 폐쇄회사의 구별과 상이한 취급이 독일에서 영향받은 것이고, 특히 19세기말에 독일에서의 과학 기술과 산업의 놀라운 발전에 충격을 받아서 회사정관의 목적조항을 비교적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점등이 그것이다.주1)

1973년 1월 1일에 영국이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된 이래로는 싫든 좋든 간에 유럽 대륙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수차에 걸친 회사법지침(Directives)주2) 들에 따르기 위해서 영국회사법이

[182]

개정되기도 했고,주3) 유럽 경제적 이익공동조합(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EEIG)에 관한 EC규칙(Regulation)주4) 에 따라서 EEIG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Partnership에 대해서 기존의 영국회사법과는 상이한 회사법을 적용해야 하게 되었고, 유럽 회사법안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유럽회사(SE)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통화단위의 통일에 대해서 경제주권의 침해라는 견해를 가지고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럽회사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 결함을 제시하고 특히 영국의 노사관계 정책과 제도를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1992년도 말까지는 유럽회사법안이 채택되어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주5) 그렇게 되면 영국회사법은 유럽대륙으로부터 또 다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 1. 광의의 유럽회사법

유럽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들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법으로서의 유럽회사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단일시장으로 형성되어가는 유럽공동체에서 아주 유혹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유럽회사법이 완성되면, 유럽공동체에서 활동하는 회사들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인 상이한 회사법으로부터 해방되어 통일된 하나의 법규에 따르기만 하

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포괄적이고 완벽한 유럽회사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각 회원국의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183]

유럽공동체 Council(주6) 은 68년도에 회사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여부와 이사 권한의 제한에 관한 제1차 회사법지침(Directive)을,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7개의 회사법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정했고, 현재까지 6개의 회사법지침안을 만들어서, 회원국의 회사법들의 조화 및 부분적인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통일된 회사제도의 하나로서 유럽 경제적 이익공동조합(EEIG)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기존의 Partnership과는 달리, 이러한 조합을 우리나라의 합명회사 처럼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간주해서 조합 명의의 법률행위는 가능하지만, 조합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조합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회사 또는 조합원에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유럽 경제적이익공동조합에 관한 EC규칙(Regulation)주7) 은 이러한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조합은 그 구성회사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 경영 또는 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유럽회사법안

유럽공동체 Commission(주8) 는 1970년에 이미 유럽회사법에 관한 EC규칙(Regulation)안(이하에서는 "유럽회사법안"이라고 약칭함)을 마련했고 1975년에 그 유럽회사법안을 개정하 바 있다. 1975년 법안에 대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1982년은 유럽회사법안에 관한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8년 6월에 Commission은 유럽회사법안을 개정해서 확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후 각 회원국 정부의 의견과 유럽의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해서 유럽공동체 Commission은 1991년 5월 16일에 새로이 개정한 유럽회사법안을 마련하였다. 유럽공동체 Council은 여러

[184]

차례에 걸쳐서 회사법에 관한 지침(Directive)을 확정·공표해 왔는바, 규칙의 형식으로 마련된 유럽회사법안은 이러한 기존의 회사법지침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주9)

영국의 통산성과 노동성은 유럽회사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1개의 단체(및 개인)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3개의 응답은 찬성이었고, 나머지는 반대이거나 회의적이였다. 반대의 응답 가운데에서도, 10개의 응답은 유럽회사(SE)의 개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고 나머지 응답은 유럽회사(SE)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회의하는 입장을 보였다.주10) 그리고 41개의 응답 가운데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응답은 31개에 그쳤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응답은 찬성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반대하였다.주11)

회사법의 역할에 대한 견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한다면, 1930년대에 미국 California주 회사법을 입안한 바도 있는 Ballantine교수와 같이 회사법의 주요목적은 회사들의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질서 속에서 회사제도의 장점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회사들의 경제적 중요성을 중시해서 회사제도는 노사관계나 환경보호 등과 관련해서 사회개선 및

변혁의 매체나 도구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

[185]

는 견해가 있다.주12) 시장경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각 주마다 회사법이 상이하더라도,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회사경영자들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주들은 자발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사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임하는 것이 미국 전체의 생산성 극대화에 바람직하다고 본다.주13) 이러한 논리를 유럽공동체에 적용하면, 공동체 내에서의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이 확보되는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 회원국들은 보다 효율적인 회사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회원국 사이의 이와 같은 경쟁에 의해서 마련되는 제도가 유럽공동체의 관료주의적이고 규제주의적인 법제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시장경제이론만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회사법의 역할에 있어서 시장 경제적 접근에 입각해서 영국은 유럽회사법안을 비판하기도 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법안내용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컨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바, 영국회사법에서는 이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서 당해 이사가 선의이고 경영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행동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데,주14)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해서 이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제도가 유럽회사법안에는 인정되어 있지 않고, 유럽회사법안에서도 영국회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사나 감사를 위한 책임보험을 드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불분명하다.주15) 소수주주의 보호에 있어서도, 영국 회사법하에서는 정관의 위반이나 소수주주에 대한 기망 또는 소수주주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이익한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수주주에게 제소권이 인정되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186]

법원은 사안을 심리해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라거나 특정 이사의 권한조절 또는 회사해산 등과 같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해서,주16) 유럽회사법안에서는 주식총수의 1할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또는 주주들)에게 일률적으로 제소권이 인정되어 있어서 주주의 제소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이 심각한 방해를 당하거나 사업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들이 영국 업계에서 제기되었다.주17)

## II. 유럽회사의 준거법

### 1. 설립

유럽공동체 회원국 내에 설립된 공개회사들이 신설합병을 하거나 공동의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 or SE)를 설립할 수 있다.주18) 자연인 주주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걸친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럽회사(SE)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또한 유럽회사(SE)의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성회사들도 2개 이상의 공동체 회원국에 이미 본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밖의 회사로서 단일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내의 회사와 합병하는 형식으로 유럽회사(SE)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주19) 유럽회사(SE) 설립의 엄격한 제한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여서, 1991년도 개정 유럽회사법안은 공개회사뿐만 아니라 폐쇄회사들도 공동의 지주회사로서의 유럽회사(SE)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개 이상의 회원국에 있는 회사들뿐만 아

[187]

니라 동일한 회원국에 있는 회사들도 그 자회사나, 지점이 타회원국에 있는 한 유럽회사(SE)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단일회사도 타회원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가지고 있는 한 유럽회사(SE)로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주20)

유럽회사(SE)를 설립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최저자본금은 유럽화 10만ECU(주21) 이고, 제1차 회사법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영업의 중심지로서의 본점을 일정 회원국 내의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주22) 본점의 소재와 그에 따른 등기는 일정 회원국에서 타 회원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주23) 본점이 소재할 회원국의 선택은 회사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유럽회사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들은 유럽회사법안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묵시적 기본원칙들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본점이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의 회사법 가운데 공개주식회사에 적용될 규정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주24) 예컨대, 주주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명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유럽회사법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지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본점이 등록되어 있는 회원국의 관련법규에 따르게 될 것이다.

## 2. 영국회사법의 적용 여부

또한 유럽회사법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영국 회사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통산성에 의한 회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영국회사법에 의하면, 특정 회사가 회사채권자를 기망하거나 소수의 주주에게 불공정하게 불리한 행위가 있거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통산성장관은 검사인을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당해 회사를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한 후 민·형사 소송의 제기라거나 이사의 자격 박탈 또는 회사 해산의 청구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

[188]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주25) 영국에 본점이 등록되어 있는 유럽회사(SE)에 대해서도 영국 회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유럽회사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영국 회사법에 따라서 영국 통산성장관은 일정한 경우에 조사권을 발동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영국에서도 영업을 하지만 그 본점이 영국 이외의 공동체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유럽회사(SE)에 대해서도 영국의 통산성장관이 조사권한을 행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영국 통산성은 문제된 유럽회사(SE)가 영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영국법에 따라서 통산성장관이 조사권한을 행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주26)

## 3. 준거법으로서의 회원국 국내법

유럽회사법안은 그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회원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

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이한 회원국에 본점을 등록하게 된 유럽회사(SE)들 사이에는 그들에 적용되는 회사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유럽회사법안이 마련된 본래의 취지는, 국경을 초월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단일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되고 단일한 법제도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서 유럽회사(SE)의 이름도 회원국 공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 "Societas europaea"라고 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유럽회사법안은 많은 경우에 회원국 국내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럽회사법은 12회원국에 상응하는 12개의 상이한 유럽회사법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럽회사법안이 느슨한 형태의 그리고 간접적인 효력만을 가지는 회사법지침들을 원용하는 것은 유럽회사(SE)에 관한 법적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러한 회사법 지침과 유럽회사법의 해석을 위해서 유럽공동체법원(Court of Justice)의 판정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주27) 영국의 전

[189]

경련(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등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은 유럽회사법안과 회사법지침 그리고 회원국 국내법과의 이와 같이 복잡한 상호관계로 인해서 유럽회사의 이용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고 단일시장 내의 회사법의 통일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주28) 영국정부도 이러한 미비점을 중시하면서, 현재의 유럽회사법안이 대폭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공동체 단일시장에서의 회사활동의 안정화 및 효율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주29)

### III. 유럽회사(SE)의 경영구조

#### 1. 이사회(또는 감사회)의 구조

제5차 회사법 지침안은 회사 경영구조에 관해서 처음에는 독일에서와 같이 이사회와 감사회의 2원구조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감사회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못한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침안은 1원적인 경영구조도 허용하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non-executive directors)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주30)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공개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들이 2원적 경영구조에서의 감사(또는 1원적 경영구조에서 감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로 임명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제5차 회사법 지침에서의 경영구조에 관한 규정들은 유럽회사법안에도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주31) 양자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5차 회사법지침안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면, 영국은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모든' 공개회사가 기존의 경영구조를 버리고 이사들이 다른 부류의(즉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사들이나 감사들에 의해서 감독되는 새로운 경영구조를 가지도록 회사법을 개

[190]

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유럽회사법안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유럽회사(SE)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의 회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회사법안에 규정된 경영구조를 원하지 않는 영국회사들은 유럽회사(SE)형태를 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5차 회사법지침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주32)

## 2. 근로자의 경영참가

유럽회사법안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된 점은, 제5차 지침안에서도 제시된 바 있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the worker participation)이다. 유럽회사법안에 부속되어 있는 근로자경영참가지침에서는 몇 가지의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방안들을 제시하고 각 회원국은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안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회사법안에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첫째, 감사회(supervisory board) 또는 경영위원회(administrative board)를 구성하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수의 감사 또는 이사(즉 감독이사)를 근로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로는 이사들은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 되도록 하되 각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주주총회와 근로자대표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된 기관이 그러한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야 한다. 셋째로는 주33) 근로자를 대표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고 법정된 사항에 관해서는 그러한 근로자 대표기관이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히 이사회(또는 감사회)에 대해서 일정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또는 감사회)는 사전에 이러한 근로자 대표기관의 의견을 청취(consultation)해야 한다. 유럽회사법안은 또한, 유럽회사(SE)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그 구성회사들의 이사회들과 그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위의 세 가지 이외의 근로자경영참가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합의된 근로자경영참가방안은 근로자들 또는 그 대표기관에게 최소한 위의 셋째 방안에서와 같은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1]

유럽 회사법안에서 제시된 이러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들은 영국의 전경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영국의 전경련 등이 특히 걱정하는 점은, 유럽회사법안에서 제시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사의 선임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것이고, 1원적 경영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선임한 감독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보고사항과 정보의 범위는 광범해서 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34) 즉, 영국의 노동관계법은 이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단체협상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근로자들에게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주35)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감원조치와 영업양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consultation) 있는데, 주36) 유럽회사법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의 비효율성과 비전문화만을 초래해서 회사의 이윤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점은, 유럽 전체에 걸쳐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가 도입되면 그러한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 그러한 제도에 익숙한 독일 회사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따라서 초기부터 우위를 선점하기 쉬울 것이라는 점이다. 영국 정부도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회사법안에서와 같이 법에 의해서 강요된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특히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이래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제적 및 사회적 전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노사간에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 경영

참가방식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영국 정부는 법에 의해서 근로자 경영참가를 강요하는 유럽회사법안에 반대한다.주37) 영국 정부는 회사법에 의한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강요와 같은

[192]

규제주의적 접근에는 반대하는 대신, 자발적인 형태의 근로자 경영참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지주의 범위를 넓혀 가도록 권장하고 정부도 일반회사들의 근로자에의 주식배당에 대해서 면세 등의 조세특혜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주38)

---

주1)

John H.Farrar, *Company Law*(London, Butterworths, 1991) at 25.

주2)

지침은 최종적으로 Council에 의해서 확정·공포되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은 지침에 규정된 일정한 목표들을 달성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각 회원국이 지침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즉 국내법률이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의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따라서, 지침은 회원국에 간접적인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국내법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Regulation과는 상이한 것이다: Art. 189, the Treaty of Rome.

주3)

1980년, 1981년, 1985년 그리고 1989년에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회사법 지침들이 반영되었다.

주4)

규칙은 최종적으로 Council에 의해서 확정·공포되는 것으로서, 회원국의 국내법화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각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 점에서, 회원국들이 일정한 목표들을 달성해야 할 의무만을 가지고 각 회원국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즉 국내법률이나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의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지침(Directive)과는 상이한 것이다: Art. 189, the Treaty of Rome.

주5)

Alfred [F.Conard, The European Alternative to Uniformity in Corporation Laws, 89 Michigan L. Rev. 2150 \(1991\) at 2166.](#)

주6)

Council(정식 명칭은 Council of Ministers)은 각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이 Council의 주요한 결정에는 참석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전에 관련된 장관들이 참석한다. Council은 Commission에 의해서 제안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7)

Art. 3(2), the EC Council Regulation on the EEG.

주8)

유럽공동체 Commission은 유럽공동체의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정부나 Council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주9)

예컨대, 유럽회사법안의 자본과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제3장은 제2차 회사법지침(the Second Company Law Directive)에 기초하고 있고, 유럽회사법안의 총회와 이사회 및 감사회에 관한 제4장은 제5차 회사법지침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회사법 제6장은 제4차 및 제7차 회사법지침을 유럽회사(SE)에 응용한 것이고, 유럽회사법 제2장은 제10차 회사법지침안에서 응용된 것이다.

주10)

유럽공동체 전체에 걸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각 회원국들(member states)에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그룹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세무처리상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특정 회원국 내의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내의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액만큼 공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것이 유럽회사(SE)제도를 만든 취지의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2중과세 방지에 관한 상세한 법규가 있어서 유럽회사법안이 없더라도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주11)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Company Statute(London, HMSO, 1990) at 10.

주12)

Janet Dine, The European Company Statute, 11 Co. Law. at 209(1990).



주13)

[Alfred F.Conard, The European Alternative to Uniformity in Corporation Laws, 89 Michigan L.Rev. 2150\(1991\).](#)

주14)

Section 727, the Companies Act 1985.

주15)

Section 137, the Companies Act 1989 참조.

주16)

Section 122(1)(g), the Insolvency Act 1986; Section 459, the Companies Act 1985.

주17)

특히 영국 전경련은 제소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1할로 정한 것은 너무 낮은 한도이어서 대주주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익도 침해될 위험이 많다고 비난한다: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y, op. cit., at 19, 28.

주18)

Article 2, the EC Regulation on the ECS(Proposal).

주19)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at 11.

주20)

Article 2, (1a)항과 (3)항 참조.

주21)

약 7만 파운드 또는 13만 마르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점에서 5만 파운드의 최저자본금이 요구되는 영국의 공개주식회사와 비교된다.

주22)

Article 5, the EC Regulation on the ECS(Proposal).

주23)

신설된 Article 5a 참조.

주24)

Article 72, the EC Regulation on the ECS(Proposal).

주25)

Sec. 431, 432, 438, 442, 446, 447, the Companies Act 1985.

주26)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Proposal for a European Company Statute(a Consultative Document) (London, Dec. 1989) at 7.

주27)

Article 177 of the Treaty of Rome.

주28)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y, op. cit., at 10, 11.

주29)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 Consultative Document(op. cit.) at 10.

주30)

10 Co. Law. 241(1989).

주31)

Articles 62-67, the EC Regulation on the ECS(Proposal).

주32)

Janet Dine, The European Company Statute, 11 Co.Law. 210(1990).

주33)

Article 72, the EC Regulation on the ECS(Proposal).

주34)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op. cit., at 32.

주35)

Sections 17-21,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1975.

주36)

Section 2(6),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Section 99, the Employment Protection Act 1975; Regs 10 &11, the Transfer Regulations.

주37)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 Consultative Document(op. cit.), 9.

주38)

10 Co. Law. 241(1989); 11 Co. Law. 213(1990).